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31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9. 17.

판결 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220,790원 및 그 중 261,192,44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5.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12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에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은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25.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변제기 2018. 4.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피고 B은 2014. 11.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1252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A이 2014. 11. 25. 농협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농협은행은 2015. 1.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24. 농협은행에 261,192,4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28,343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261,220,790원(= 261,192,447원 + 28,34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61,192,4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5. 22.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1. 11. 이후인 2015. 3. 24.에야 농협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

② 이 사건 신용보증상의 보증사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1. 11.로부터 불과 2주 후인 2014. 11. 25. 발생한 점, 증인 D도 남편인 피고 B이 2014. 11.경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5. 3. 24.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피고 B의 배우자인 D이 2013. 8. 2. 피고 C으로부터 6,700만원을 차용하였고, ② D이 2014. 11.경 피고 B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D이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되, 등기의 방식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④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1억 5,100만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만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500만원을 인수하면서 D의 위 6,700만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D과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협의 및 D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변제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D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매매이다. 또한 피고 B과 D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2013. 8. 2.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6,700만원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 C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D이 아니라 피고 B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 B은 자신의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물변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③ 피고 C이 실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피고 C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평소 피고 B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고 하여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인숙

판사노미정

판사곽용헌

별지